

# 法の 存在價値分析을 爲한 하나의 方法論

—法の 이데올로기성 문제를 중심으로—

李 宗 律

—A study on examining the material foundation of law—

Lee, Jong-Yool

## 〈 目 次 〉

- |           |                |
|-----------|----------------|
| I. 問題의 提起 | 2) 이데올로기의 重要機能 |
| II.       | III. 法과 이데올로기  |
| 1) 이데올로기란 | IV. 結 論        |

## Abstract

This paper is trying to examine the material foundation of law objectively. It is to be said that law is in order to establish justice or order. But it may be wrong to say that the material foundation of law is in establishing justice or order. That is resulted from the Ideology of law. Therefore this paper is trying to explore the material foundation of law with understanding the Ideology of law.

## I. 問題의 提起

人間社會에서 法の 存在理由 내지 存在價値를 解明하는데 있어서, 흔히들 ‘秩序維持’, ‘正義具現’과 같은 概念으로서 그것을 說明한다. 秩序維持, 正義具現은 추상개념인데 이 추상개념을 구체 개념으로 전화시켜 그 意味를 정립하는 主體는 人間이다.

人間이란 자기가 살고 있는 世界 속의 法이 자기에 實行하도록 要求하는 人間—人間關係, 人間 物質關係의 形式, 內容을 바탕으로 자기의 法的 體驗을 쌓아가는 存在이고, 또 法이 要求한 人間—人間關係, 人間—物質關係에서 體驗한 事件들을 自己意識世界에서 省察하여 그러한 概念이 갖는 具

體的 意味을 자기 나름대로 定立하는 存在인 까닭이다.

이와 같이 人間은 자기의 法的 體驗을 바탕으로, 또 그 법적 체험에 대한 自己省察過程을 겪으면 서, 나름대로 그것들을 具體概念으로 전화시키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법적 체험의 바탕이 되는 法秩序—모든 人間—人間關係, 人間—物質關係에서 나타나는 法律關係와 形式, 內容—는 개념을 전화시키는 主體인 人間 自己의 意志와는 다른, 아니 오히려 거의 상관없이 決定되어져 있다.

人間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일정한 法秩序 속에 이미 던져진 存在에 불과하다.

人間이란 法秩序 속에 던져진 存在에 불과하므로 法이 要求한 人間—人間關係, 人間—物質關係의 定式을 實踐世界나 意識世界에서 否定, 도전하는 사태를 일으킬 경우에, 그런 人間은 법질서를 파괴한, 法正義 實現을 파괴한 사람으로 간주됨과 동시에, 自己 個人意志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物質的·物理的強制制裁까지 받게 된다는 사실을 상상하면 충분할 것이다.<sup>1)</sup>

(물론 革命과 같이 社會秩序가 급격히 변하는 過程에서 人間集團의 政治的 결단에 의해 새로운 법질서가 定立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 論文에서는 그러한 현상은 우선 예외적인 경우로 전제하여 제외시키고 있음.)

여기에서 하나의 문제가 제기된다. 秩序維持, 正義具現이란 개념이 전화·정립되는 과정에서 바탕이 되는 法秩序가 그 개념을 전화·정립하는 主體인 人間の 自己意志와는 상관없이 決定지워진 狀況 속에서 人間の 意識·實踐世界에서 체험하고 성찰하여 정립한 질서유지, 正義具現의 意味란 실질적으로는 既存 法秩序를 正當化 해주는 意味로서 限定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질서유지, 정의구현의 구체적 의미를 탐구·해명하고 정립해야 할 主體인 인간에게 自己意志와는 상관없이 이미 어떤 價値와 信念이 內在된 法的 體驗, 法的 思考活動을 法이 인간에게 強制的으로 要求하는 狀況에서 인간이 겪게 되는 법적 체험, 法的 思考活動이란 어떤 울타리 속에 감금당한 상태와 동일한 것이다.

人間은 이미 어떤 法秩序 속에서 자신의 法的 體驗, 法的 思考活動을 감금당하고 있다. 감금의 울타리가 바로 질서유지이고 정의구현이다.<sup>2)</sup>

감금당한 상태의 인간이 탐구·해명하여 정립한 질서유지, 정의구현의 의미만으로서서는 어떤 법질서의 存在根據를 客觀적으로 解明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의구현 및 질서유지라는 추상적 개념으로서 法的 存在價値에 대한 解明을 고집한다면, 既存의 法秩序 속에 內在된 어떤 가치, 信念이 해명하고 정립하는 主體로서의 人間을 客體적으로 評價한 土台위에서 法的 存在根據가 탐구되고 해명되어야 된다는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sup>3)</sup>

그런 까닭으로 法的 存在價値는 질서유지, 정의구현이라는 概念만으로서서는 客觀적으로 해명될 수

1) H. Barth, *Truth and Ideology*(Berkley, Los Angele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6), p. 108. 참조. R. A. Garner, *Social Change*(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1977), pp. 246~247, 262 참조. István Mészáros, *Theory of Alienation*(London: Merlin Press, 1978), pp. 186~189 참조.

藤田 勇, *法と經濟の一般理論*(東京: 日本論評社), pp. 22~34 참조.

2) The Frankfurt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Aspects of Sociology*, trans. by John Vicitel(Boston: Beacon Press, 1972). p. 176~177 참조. (이하 F. I. S. R로 약칭함)

3) 平野義太郎, *國家, 法の科學的研究*(京都: 法律文化社, 1979), p. 15 참조.

도 없을 뿐 아니라 法の 存在根據를 질서유지, 정의구현에서만 찾게 된다면, 既存 法秩序의 自己正當化만을 理論적으로 확립시켜 줄 수도 있는 契機가 마련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惡法的 秩序를 正法的 秩序로, 正법적 질서를 악법적 질서로 색칠하여 既存 법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로부터 法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客觀적으로 탐구·해명할 수 있는 힘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바로 法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性 問題이다.

## II.

문제의 提起에서 밝힌대로 질서유지, 정의구현과 같은 추상개념을 구체적인 개념으로 전화시켜 그 意味를 定立하는 主體인 人間에게는 이미 어떠한 價值·信念과 關連되어진 법적 질서, 法的 正義만이 질서유지, 정의구현으로 체험되고 思惟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法の 存在根據를 질서유지, 정의구현에만 찾아 해명한다면 法이 갖는 이데올로기性은 폭로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고, 동시에 法の 存在根據가 客觀적으로 탐구·해명될 수 없다.

즉 法の 存在根據를 客觀적으로 탐구·해명하기 위해서는 法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性 分析은 필연적인 과제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과제에 대한 해결로서 우선 하나의 方法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개념의 정의와 기능을 간단히 고찰하고자 한다.

### 1) 이데올로기란

모든 社會에는 어떠한 信念이라든지 價值와 關제되는 概念들이 있다. 그런데 價值 혹은 信念과 關제되는 개념들은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참되고 有用한 것이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社會에서 일반적으로 올바른 것으로 보고, 듣고, 느껴지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것들을 正當한 것으로 믿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概念들이 이른바 이데올로기이다. 이데올로기란 그것이 科學적으로 價值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法的 혹은 道德的 次元에서 필연적으로 正當性이 內在되어 있고, 또 그렇게 믿게끔 要求하기 때문에 人間들이 일상적으로 믿어버리는 그러한 概念에 불과한 것이다.

이데올로기란 이처럼 科學的인 論理로서 증명되지도 않고, 단지 법규범 혹은 社會的 관습 내지 도덕적 차원에서 正當한 것으로 요구되기에 인간들이 믿게 된 他律的인 가치와 신념에 關제된 概念일 지라도 社會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사회구성원 자신들의 行動을 이해하고 正當화하는 데 있어서나 혹은 他人의 行爲나 價值觀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나 혹은 理解하는데 있어서 絶對적인 影響력을 발휘한다. 또한 인간들이 자기 體驗을 해석·인식하거나, 또 더 훌륭한 自己生存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 어떤 行爲가 요구되는가에 대한 선택·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重大한 影響력을 행사한다.

이와 같이 既存 社會秩序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人間 生存 현상의 해명이라든지 正當화는 이데올로기를 매개로 해서 성립되는데, 그 理由는 連역적으로 보면 모든 이데올로기가 무릇 인간의 本性

이 무엇인가, 社會의 本質이 무엇인가 하는 「人間觀, 世界觀」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가치 신념에 관계된 개념이기 때문이다.<sup>4)</sup>

人間的 本性, 社會의 本質에 대한 어떤 原則까지 내포하고 있는 價値·信念의 체계가 이데올로기이므로 비록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社會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뽐낼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인간 行爲의 正當化 基準, 理解·認識基準, 선택기준이 되고, 社會가 어떤 질서로 보존되고 발전되고 통합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가치·신념체제이므로 언제 누구 혹은 어떤 인간 집단에 의해서도 깨트려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지배이데올로기는 그것에 內在된 가치 신념체제가 要求하는 인간의 모습, 社會의 모습이 참되고 절대적인 것으로 社會構成員들이 意識하고 實踐하도록 자기의 터전을 닦는데 끈을 늦추지 않는다.<sup>5)</sup>

그것은 이데올로기가 이데올로기로서 존립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인데, 그러면 이데올로기는 어떤 기능을 통해서 이데올로기로서 존립하게 되는 것인가?

## 2) 이데올로기의 중요 기능

인간의 本性, 社會의 本質에 관한 어떤 원칙까지 주장하는 가치·신념체제로서의 이데올로기는 인간 행동의 정당화 기준, 선택 기준, 혹은 인간의 체험에 대한 인식·해석 기준이 되며, 또한 社會가 어떤 질서로 보존 발전되고 통합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척도이기도 하다. 그런데 어떤 이데올로기가 주장하는 요구들이 現實世界的 인간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엔 그것이 이데올로기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인간의 歷史에서 모든 지배 이데올로기는 이데올로기로서 존립하기 위해서 직접·간접으로 人間生存 그 자체인 인간의 意識活動, 實踐活動을 지배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 속에 새겨두면서 이제부터 이데올로기의 기능을 나누어서 살펴 보기로 하겠다.

① 이데올로기가 인간의 本性, 社會의 本質에 대한 어떤 原則을 주장하는 가치·신념체제라는 데서, 이데올로기가 인간의 意識世界를 지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어져 있다.<sup>6)</sup>

4) R. M. Christenson, Alan S. Eugel, Dan N. Jacobs, Mostafa Rejai, Herbert Waltzer, *Ideologies and Modern Politics*(New York: Dodd Mead & Company, 1975), p. 6 참조.

Morton A. Kaplan, *On Historical and Political Knowing*(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1), pp. 75~76 참조.

G. Abcarian and M. Palmer, *Society in Conflict*(San Francisco: Canfield Press, 1974), pp. 137~138 참조.

K. NKrumah, *Consciencism*(New York, London: Monthly Review Press, 1970), pp. 57~61 참조.

F. I. S. R., *op. cit.*, pp. 189~190 참조.

Garner, *op. cit.*, pp. 262~264 참조.

5) K. NKrumah, *op. cit.*, p. 57; F. I. S. R., *op. cit.*, p. 201 참조.

6) Christenson *et. al.*, *op. cit.*, pp. 15~16, 18 참조.

Abcarian and Palmer, *op. cit.*, p. 150~151.

NKrumah, *op. cit.*, p. 57 참조.

Garner, *op. cit.*, p. 263 참조.

Barth, *op. cit.*, pp. 100, 109~110 참조.

F. I. S. R., *op. cit.*, pp. 182, 185, 189~191, 202 참조. 藤田, 前掲書, pp. 76~87 참조.

모든 사회에는 人間觀, 世界觀에 관련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있다(예를 들면 오늘날 사회에서는 前近代社會와는 다른 人間觀, 世界觀이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다. 즉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生命權, 自由權, 幸福追求權과 같은 權利는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될 수 없는 權利다」, 「모든 인간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 평등이 있다」 등과 같은 가치·신념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채로 대부분 인간들이 진실되고 당위적인 것으로 믿고 있다).

어떤 사회에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있으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근거로 해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인식하며 또 그것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인간의 意識活動이다.<sup>7)</sup>

인간은 이와 같이 이데올로기라는 창문을 통해 自己同一性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도 확인하게 되므로, 지배 이데올로기는 인간이 생존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안정감·확실감을 불러일으켜서 이데올로기를 믿어 버리는 인간들에게 피난처와 같은 기능을 하기도 한다.

그것은 자기 이해, 자기 인식, 他者 理解, 他者 認識의 활동이 意識世界에서 지배 이데올로기를 매개로 하여 진행되는 경우란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즉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든지 「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懷疑할 필요없이 지배 이데올로기가 풀어놓은 해답을 자기의 意識世界 속에서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므로 —기존 질서 속의 인간 모습, 사회 모습에 대한 懷疑 省察은 意識主體로서 포기하고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평온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간의 역사에서 대부분의 인간들은 지배 이데올로기가 풀어놓은 해답을 自己 意識世界에다 신중히 모셔놓고서 자기를 이해·인식하고 다른 사람을 인식하고 사회질서를 이해하지만 그들이 모방하여 신중히 모셔놓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인간관, 세계관 역시 인간 意識活動의 產物에 지나지 않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인간의 意識活動에 의한 產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本性, 社會의 本質에 대한 어떤 原則을 주장하는 가치·신념체제로서의 이데올로기에는 인간에 의한 人爲的 조작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어 이데올로기가 풀어놓은 인간관, 세계관은 客觀性, 科學性이 결여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추론할 수가 있다. 또한 人爲的으로 조작된 결과와 지배 이데올로기가 행사하는 실질적인 지배력 때문에 대부분의 인간들은 全體的이 아니라 部分的인 方向에서만, 合理的이 아니라 非合理的인 方向에서만 인간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사회를 이해하며 해석하게 된다면 비록 심리적으로는 安定感을 획득할 수 있지만 인간의 정신적 긴장은 위축당하거나 왜곡당할 수 있음도 분명한 사실이다. 즉 과학적으로 立證되지 않은 概念에 지나지 않는 이데올로기를 단지 그것이 法的 혹은 道德的 次元에서 정당한 것으로 요구되기에 옳다고 믿어버리고, 사회에서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어떤 메카니즘 속에서 무슨 목표로 누구 혹은 어떤 집단에 의해서 生産된 것인가를 批判的으로 意識하지 않게 되면 自由로워야 할 인간의 意識世界가 自由롭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인간—인간관계, 인간—물질관계 속

7) 만일 전근대적 신분질서 속에서 하층계급에 속하는 모든 인간이 그들도 자신들의 상전과 동일한 인간이라고 이해하고 인식하든지 혹은 그들의 상전이 하층계급에 속하는 인간들과 똑같은 인간이라고 이해하고 인식했다면 신분적 질서는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다.

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具體의 사건들이 인간의 意識世界에서 그것에 의해 지나치게 單純化 되거나 왜곡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어떤 社會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意識世界를 지배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意識活動을 黑白論理의 틀안에 얽매이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②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意識世界뿐 아니라 實踐世界도 동시적으로 지배한다.”

이데올로기는 인간이 행동을 함에 있어서 판단, 선택, 평가 기준이 되어 인간의 生存過程에서 인간의 本質 가운데 한 부분인 인간의 행동이 어떠한 形式, 內容이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는 定式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인간의 實踐世界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란 이처럼 어떤 행동이 인간의 행동으로서 정당하고 합리적인가를 제시하는 공식이므로 그것은 인간이 행동을 함에 있어서 판단·선택의 기준도 되겠지만, 인간은 자기 행위의 정당함을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확인받게 되고 또한 他人의 행위도 그것을 매개로 하여 평가한다.

이데올로기란 자기 행위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정당화 하려는 것이거나 他人의 행동을 해석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絕對의 기준이므로 社會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벗어나는 행동을 선택하여 현실적으로 실천에 옮긴 인간들은 反道德的, 不法的인 행동을 실행한 인간으로서 해석·평가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物質的, 物理的인 制裁를 그들에게 강요하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강요라는 것으로 해석·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다.

밝힌 바와 같이 社會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그것이 現實적으로는 비록 社會 構成員들을 지배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것에 대한 客觀的이고 科學的인 평가는 유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檢證되지 않은 가치·신념체계로서의 이데올로기가 社會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단순한 사실 그것만으로는 그것이 인간의 행위 기준이 되어 인간의 實踐世界를 지배할 수 있다는 論理는 성립되지 않는다(신분사회와 이데올로기와 오늘날의 이데올로기는 다른 성질의 것이다. 그래서 오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신분사회의 이데올로기가 社會 하층계급의 행위를 非合理的인 方向에서 강제적으로 규정했다고 비판할 것이다).

따라서 그런 경우엔 社會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벗어나는 행위를 어떤 인간이 실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不法的, 反道德的인 인간이라고 단순하게 해석·평가해 버리거나 혹은 물리적, 물질적 제재를 그에게 무조건 강요할 경우엔 非人間的인 行爲가 人間的인 行爲로, 人間的인 行爲는 非人間的인 行爲로 전도되어 인간의 非正當的인 實踐世界가 정상적인 實踐世界로 전화되게 된다.

비정상적인 실천세계가 정상적인 실천세계로, 정상적인 실천세계가 비정상적인 실천세계로 변질된 社會에서의 인간에게는 자유로운 人間的인 行爲는 있을 수 없다. 오직 자기의지와 대립되는 강요된 행위만이 있을 뿐이며, 나아가서는 강요당한 비인간적인 행위가 자유로운 인간의 행위로까지

8) Christenson *et. al.* *op. cit.*, pp. 16~17 참조.

Palmer. *op. cit.*, pp. 150~151 참조.

Garner. *op. cit.*, p. 263 참조.

藤田, 前掲書, pp. 87~88 참조.

해석·평가되어 버릴 가능성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惹起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③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意識世界, 實踐世界를 지배하므로 모든 인간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매개로 하여 자기 갈등·투쟁을 조정하고 통합시키며, 또한 사회의 갈등·투쟁도 이데올로기를 매개로 하여 조정되고 통합된다.<sup>9)</sup>

개인의 경우, 인간은 意識世界라든지 實踐世界에서 발생하는 자기 투쟁·갈등을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조정·통합시키게 되며, 사회에 있어서는 인간과 인간사이에서 혹은 인간과 물질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립·갈등 현상들을 순화·제거시켜 사회를 일정한 질서로 보존 통합되게 하는 기능을 지배 이데올로기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 그 자체인 자기-자기 관계, 자기-他人關係, 인간-물질관계 속에서 갈등·대립이 일어난다는 것은 거의 필연에 가까운 현상인데 이러한 갈등·대립이 조정되거나, 순화되거나 혹은 제거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인간의 生存過程이란 자기 분열, 사회 분열(인간과 인간끼리의 분열, 인간과 물질사이에서의 분열)만 있을 뿐이고, 자기통합·社會統合이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기통합, 사회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분열, 사회분열만이 있는 상황에서의 인간의 모습이란 미친 사람과 같은 병든 인간의 모습일 것이고, 또 그와 같은 상황에서의 사회모습이란 투쟁만 있을 뿐이지, 평화·질서란 찾아 볼 수 없는 병든 사회이다. 「나」, 「너」라는 인간이 병든 인간이 아니라 건강한 인간임을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병든 사회가 아니라 건강한 사회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이론적 현실적 뿌리가 이데올로기이다.

이것이 이데올로기의 統合機能인데, 이데올로기는 분열을 방지하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既成의 사회 구성원 뿐 아니라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새로운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지침의 기능까지도 겸하고 있는 것 역시 일반적인 사실이다(그것은 새로운 세대가 既存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거부한다면 既存의 사회질서 그 자체의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상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실이다).

그런데 인간의 의식·실천세계를 이데올로기는 지배하게 됨에 따라 이데올로기는 자연히 인간의 자기 분열, 사회 분열을 방지하고 자기 통합, 사회 통합을 이루는 기능을 담당할 수 밖에 없음을 당연하다 하더라도, 이데올로기가 갖는 통합기능에 대해서 음미해야 할 사실들이 있는 것이다.

④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갖는 統合機能이 참된 최머로서의 統合을 꾀하는 경우가 그 첫 번째이다. 즉 이데올로기에 내재된 가치·신념이 인간의 의식·실천세계를 진리의 세계로 이끌고 있을 경우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가 꾀하는 統合이다.

⑤ 둘째로는 밝힌 바와 같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인간의 의식·실천세계를 자유롭지 못한 위축되고 왜곡당한 세계로 빠트릴 수도 있다. 이데올로기 때문에 인간이 意識·實踐 世界가 위축되고

9) Christenson *et. al.*, *op. cit.*, pp. 17~18 참조.

Abcarian and Palmer *op. cit.*, p. 150 참조.

Garner, *op. cit.*, pp. 260, 263 참조.

Barth, *op. cit.*, pp. 64~71 참조.

Erich Fromm, *Man for Himself*(London and Henley: Routledge & Kegan Paul, 1978), pp. 38~117 참조.

왜곡된 세계에 빠져 버렸을 경우 인간은 부당한 현상을 정당한 현상으로 의식하거나 혹은 부당한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서 판단·선택하거나 평가하게 되어, 나아가서는 비록 意識世界에서는 부당한 현상으로 이해하고 의식하면서도 實踐世界에서는 그것을 否定·克服하지 못하는 분열상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이데올로기가 보여준 통합기능이란 가짜 통합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 이데올로기는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진짜 통합을 달성한 것 처럼 각색하게 되는 것이다.

즉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意識·實踐 世界에서 盲目的이고 無批判的으로 모방하여 살아간다면 인간들은 지배 이데올로기 때문에 자기 분열, 사회 분열 현상을 의식세계에서 비판적으로 인식·성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천세계에서도 이와 같은 분열 현상을 克服·否定하지도 못한 상태로 가짜의 자기 통합, 가짜의 사회통합 속에 자기를 던져 놓고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에서의 통합이 두 번째의 경우에 해당된다(신분 사회나 식민지 사회에서의 통합이 두 번째 경우의 통합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④ 이데올로기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로서 빠트릴 수 없는 것은, 모든 지배 이데올로기는 항상 훌륭한 사회, 유복한 생활을 약속하는 신화로서 창조된다는 점이다.<sup>10)</sup>

밝힌 바와 같이 지배 이데올로기의 목표란 그것에 內在된 가치·신념체계가 要求하는 인간의 모습, 사회 모습이 참되고 절대적인 것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의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또 사회가 일정한 질서로 統合되도록 한다는데 있었다.

이데올로기의 이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모든 지배 이데올로기에는 언제나 신비로움(추상성)이 둘러 싸여 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은 채 유지되는 것이다. 만일 이데올로기를 감싸고 있는 그 베일(추상성)은 첫째, 그 신성한 장막이 벗겨지게 되면 이데올로기가 이데올로기로서 存立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둘째, 설혹 어떤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참되고 정당한 가치·신념체제일지라도 그것의 추상성이 잘 유지될 경우에만 이데올로기는 인간 意識世界, 實踐世界를 훌륭히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것이 이데올로기가 빚어내는 환상기능이다.

또한 이데올로기의 신성함을 사회구성원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즉 이데올로기가 갖는 환상기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흔히, 학교교육이라든지 情報 매체들(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이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러한 構造的인 메카니즘에 의해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과학적 탐구·분석의 길은 인간으로부터 닫혀버리고, 이데올로기는 그 신봉자들로부터 宗教的인 반응까지 불러 일으킬 정도의 가치·신념체제로 승화되기도 한다.

10) Christenson *et. al.*, *op. cit.*, p. 18 참조.

Abcarian and Palmer, *op. cit.*, pp. 150~151 참조.

Garner, *op. cit.*, p. 260, 63 참조.

F. I. S. R. *op. cit.*, pp. 200~201 참조.

Barth, *op. cit.*, pp. 100~102 참조.

藤田, 前掲書, pp. 81, 85-87, p. 118 참조.

NKrumah, *op. cit.*, p. 70 참조.

Martin Carnoy, *Education as Cultural Imperialism*(New York and London: Longman Inc., 1977). pp. 1~25, 31~72, 306~334 참조.



그런 까닭으로 지배 이데올로기가 創造해내는 신화들을 비판적인 論理로서 분석·평가하지도 않은 채, 무비판적으로 인간들이 의식세계·실천세계에서 수용·흡수하여 자기 생존을 전개하는 경우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은 상황들, 즉 자유롭지 못한 의식세계를 자유로운 의식세계로 생각하거나 느끼게 되며, 강요당한 비인간적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은 자유로운 인간의 행위로 실천하게 되고, 가짜 통합을 진짜 통합으로 의식하고 실천할 뿐인 환상상태가 발생될 수가 있다. 즉 허구적인 것을 참된 것으로 참된 것을 허구적인 것으로 의식하고 실천하는 도착현상이 지배 이데올로기가 빚어 내는 환상의 신화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 Ⅱ. 法과 이데올로기

모든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실천세계를 지배하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기 분열, 사회 분열 현상을 제거하거나 순화시켜 일정한 方向으로 統合하기도 하지만, 지배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意識世界를 黑白論理의 포로로 사로 잡을 수도 있으며, 인간의 실천세계를 왜곡시켜 가짜 통합으로 인간의 生存過程을 이끌 수도 있으며, 神話創造를 통하여 인간과 사회를 도착상태라는, 즉 환상 상태에 몰아넣을 수도 있음을 밝힌 바 있다.

法이란 強制行爲規範이다. 강제행위 규범으로서의 法은 國家機構인 경찰, 군대의 조직에 담보되어진 物理的인 힘을 근거로 하여 어떤 법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지배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물론 既存 法秩序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 既存 法秩序 속에서 순응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物理的인 힘에 의해서 연유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들이 의식·실천세계에서 既存 法秩序를 승인한다는, 이른바 社會的 承認 現象이 法の 強制性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要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 승인 그 자체가 法 이데올로기성에 의해서 人爲的으로 조작되어진 結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법강제성의 최후 담보처는 물리적인 힘으로 해석해야 되리라고 생각된다.)<sup>11)</sup>

또한 強制行爲規範으로서의 法은 存在目標을 그 법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자기 갈등, 他存在와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사회적 갈등, 자기 生存을 再生産하는데 있어서 絕對的 要素가 되는 물질을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갈등을 조정시키거나 해소시켜, 사회구성원들을 일정한 질서으로 통합하려는데 있다.<sup>12)</sup>

즉 法이란 인간의 生存過程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인간의 자기 갈등,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소시켜 인간과 사회를 統合하여 인간의 자기 분열과 사회적 분열을 事前的으로 방지하고, 事後的으로 교정하는 기능을 갖는 강제규범이란 것이다.

11) 平野義太郎, 前掲書, p. 67.  
Garner, *op. cit.*, pp. 250~251 참조.  
井上, 法哲學(東京: 岩波書店, 1981), pp. 85~90 참조.  
(물론 井上은 사회적 승인 쪽을 강조하고 있음)

12) Barth, *op. cit.*, p. 107 참조.  
藤田, 前掲書, pp. 125~129 참조.

그렇지만 法의 本質的 속성인 強制性은 인간의 自由意志와 대립된다. 그것은 법이 창조되는 과정에서 인간들이 승인하여 스스로 法에 부여한 강제일지라도 인간의 自由意志에 대립됨은 본질상 차이가 없다.<sup>13)</sup>

이처럼 法強制란 인간의 自由意志와는 本質的으로 대립되므로 법강제성 때문에 다음 결과를 法秩序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이 당면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문제의 계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간이란 자기가 던져진 사회의 법질서가 要求하는 法律關係 속에서 자기를 체험하고, 이해·해석하고 다른 사람을 체험하거나 이해·해석할 수 밖에 없다. 자신이 던져진 상황의 법질서가 요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생각하고 공명감을 느끼고, 행동을 선택·실행하는 인간에게는 法은 선량한 市民이라고 판정하지만, 그렇지 않고 법질서가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생각하기를 거부하거나, 法이 금지하는 행위를 실행한 인간에게는 나쁜 市民 혹은 犯法者라는 딱지를 붙여준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人間生存의 기반인 삶의 社會性까지도 박탈하여 감금시켜 버린다. 또 질서유지, 정의구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인간이 자기의 體驗을 省察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립되지만, 그것이 具體的인 概念으로 전화·정립되는 과정에 있어서 바탕이 되는 인간의 法的 體驗, 法的 思考活動이란 이미 일정한 가치·신념을 內在하여 요구하는 질서속에서는 거의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앞에서 밝힌 바 있다.

그래서, 질서유지, 정의구현과 같은 개념만으로는 既存 法秩序의 存在價値를 객관적으로 해명할 수 없음에도, 그 태도를 고집하게 되면 이미 인간의 의식·실천세계에서 인간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해명·정립된 결과의 產物인 強制概念으로서 법강제성의 근거를 이론적으로 해명하는 자가 당착에 빠져버린다고 밝혔다. 인간의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해명·정립된 강제개념으로서 어떻게 법강제성의 논리적 根據를 객관적으로 분석·정립할 수 있을까?

이 논리는 결국 인간의 自由意志에 대립되는 법강제성의 이론적 근거를 객관적으로 밝혀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既存 法秩序가 인간에게 요구하는 法強制로서 기존 법질서의 법강제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타당근거를 질서유지, 정의구현으로 해명함에 지나지 않을 뿐이므로 인간들이 기존 법질서를 비판적으로 체험하고 省察할 수 있는 계기를 틀어막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질서유지, 정의구현과 같은 概念만으로는 인간의 自由意志에 대립되는 법강제를 客觀的으로 해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떤 법질서의 存在價値도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서 그것들로서 法의 存在價値를 해명할 경우엔 부당한 법질서를 정당한 법질서로서, 비합리적인 법질서를 합리적인 법질서로 인간들이 인식하고 실천하게 되는 도착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둔갑시키는 이론적 계기만을 성립시킬 따름이다.<sup>14)</sup>

13) Barth, *op. cit.*, pp. 71, 77 참조.

NKrumah, *op. cit.*, p. 61 참조.

14) 藤田, 前掲書, pp. 130~132 참조

影山日出彌, 「幻想의 國家論과 國家의 幻想論」, 和田英夫編, 法と國家(所收, 東京: 學陽書房, 1972), pp. 98~121 참조.

平野義太郎, 前掲書, pp. 131~134 참조.

밝힌 바와 같이 어떤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란 인간의 의식·실천세계를 지배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인간의 의식세계를 일정한 方向으로 고정시켜 놓고서 의식활동을 黑白論理의 포로로 사로잡을 수도 있고 자유로워야 할 인간 실천활동을 강제적이면서도 비인간적인 행동으로 치닫게 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 자유롭지 못하며 무비판적인 意識世界를 자유롭고 비판적인 의식세계인 것으로, 자유롭지 못한 비인간적인 행위를 자유로운 인간의 行爲인 것처럼 인간들이 착각할 수 있도록 조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 보았다.

이러한 사실들이 虛爲意識을 참된 의식으로, 노예로서의 行爲를 自由人으로서의 行爲인 것처럼 이데올로기가 조작하는 幻想機能인데, 이데올로기가 빚어내는 이 幻想機能이란 결국 사회의 構造와 그것을 밑받침하는 가치·신념체제들이 인간의 자기 분열, 사회적 분열을 조정·해소시켜 통합하기는 커녕 오히려 심화시킴이 실질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를 無批判的으로 신봉해 버리는 인간들은 자기의 환상상태를 의식세계에서 인식·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실천세계에서 否定, 克服할 수도 없게 된다.

法도 가치·신념체제로서 인간의 의식·실천세계를 지배한다는 데서 法과 이데올로기 기능의 接點을 발견할 수 있다면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데올로기의 기능을 법률관계에 연장 도입시킬 때 다음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질서유지, 정의구현과 같은 概念만으로 法の 存在根據를 해명한다면, 밝힌 바와 같이 부당한 法秩序를 정당한 법질서로 비합리적 법질서를 합리적인 법질서로 둔갑시키는 이론적인 契機를 마련하여, 어떤 법질서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法意識이 黑白論理의 포로가 되거나 혹은 비인간적인 犯法의 行爲를 合法的인 行爲로 각색시켜, 인간의 法的 思考活動과 法律行爲를 도착 상태에 빠트릴 수도 있다. 인간의 법적 思考活動과 법률행위가 도착상태에 빠진다는 것은 인간의 의식·실천세계가 도착상태에 빠지게 됨으로서 惡法的 질서가 正法的 질서의 탈을 쓰게 된다는 의미와 동일한 것이다. 그러한 탈(접테기)들이 곧 질서유지, 정의구현과 같은 신화적인 개념들이다.<sup>15)</sup>

그러면 여기에서 惡法的 질서를 正法的 질서로 변장하는데 있어서의 접테기들에 지나지 않는 질서유지, 정의구현과 같은 개념들로서 法の 존재근거를 해명하는 것을 포기하고서, 법의 존재가치를 객관적으로 해명해 보기 위한 方法의 하나로서 이데올로기는 「왜」 즉, 이데올로기는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어떻게 미치게 되는 것인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곧 法이 「왜」라는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해답을 제시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몇몇 입장들은 다음과 같다.

① Idealist and materialist theories of Ideologies<sup>16)</sup>

15) Garner, *op. cit.*, p. 266 참조.

藤田, 前掲書, pp. 67, 157~158 참조.

平野義太郎, 前掲書, p. 49 참조.

長谷川正安, 「國家と法の一般理論」, 和田英夫編, 法と國家(所收, 東京: 學陽書店, 1972), pp. 34~51 참조.

16) Christenson *et. al. op. cit.*, pp. 11~12.

Garner. *op. cit.*, pp. 262~269 참조.

F. I. S. R. *op. cit.*, p. 182 참조.

觀念論者들은 인간이란 그들의 生存에 關係서 理性的으로 생각하며, 그리고 이러한 理性的 思惟를 통해서 확립된 가치·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行爲라든지 制度가 形成된다고 주장하나, 唯物論者들은 이데올로기는 사회적 특권계급이 그들의 특권을 合理化시키거나 혹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비참함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生産되고 이용된다고 주장한다. 즉 이데올로기란 경제적 측면에서는 계급적 이익을 합리화시키고, 정치적 차원에서는 지배계급의 통치를 합리화해주는 수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지배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그것은 生産되고 이용될 뿐이라는 것이다.

### ② Positional theories of Ideology<sup>17)</sup>

Status-quo theories(현상유지론)은 이데올로기란 지배계급의 신념체계로서 그리고 既存 秩序를 保存하기 위한 保守的인 수단으로서 해석한다. Change theories(變化理論)은 이데올로기란 사회의 하층계급의 신념체계로서 혁명적인 변화를 위한 도구로서 해석한다.

즉 이데올로기란 既存 秩序를 비판하고 요구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창조되고 이용된다고 파악한다.

### ③ Functional Theories of Ideology<sup>18)</sup>

Psychological Theories(심리학적 理論)은 인간이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치나 規範體系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욕망이라든지 행동들을 심리적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데올로기를 개발하고 이용한다고 주장한다. 즉 利己的인 인간의 行爲를 역사적으로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든지, 公共精神이 함양된 행동으로 변질시키는데 있어서 이데올로기가 개발되고 이용된다는 입장이다.

또 프롬(E. Fromm)같은 사람은 現代社會의 거대함, 비인간적인 세력, 복잡한 爭點 때문에 인간은 자기 이해력을 상실, 자기 통제력을 위축당하여 객관적으로 소외감만 증만해질 수 밖에 없어서 이데올로기가 생산·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현대 인간은 자기 도피처로서 이데올로기라는 도그마를 심리적으로 찾는다고 설명한다. Sociopolitical Theories(社會政治學的 理論)은 이데올로기란 피지배자 집단이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도덕적 차원에서의 그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통치당하고 있다고 믿고자 하는 인간의 믿음을 메꾸어 주기 위해서 창조되어진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연결하는 일종의 接點으로서 合意事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이데올로기가 「왜」 요구되는지의 간략한 설명들에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結論은 ① 이데올로기란 인간의 의식활동의 產物이며, ② 인간 의식활동의 산물로서의 이데올로기는 대체적으로 一革命的 變化를 요구하기 위해서 社會의 하층계급에 의해 생산·이용되는 수도 있으나, 既存의 秩序를 保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동원되며, ③ 기존질서의 보존 수단으로서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자기 갈등, 사회 갈등, 즉 자기 분열, 사회 분열 현상을 은폐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생산되고 이용

17) Christenson, *op. cit.*, pp. 12~13.

H. Lasswell and A. Kaplan, *Power and Society*(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69), p. 123 참조.

18) Christenson *et. al.*, *op. cit.*, pp. 13~15.

Erich Fromm, *Escape from Freedom*(London and Henley: Routledge & Kegan Paul, 1977) 참조.

되는 도그마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sup>19)</sup>

법의 機能과 이데올로기 機能이 接合될 수 있을 가능성을 앞에서 밝힌 바 있는데, 이데올로기는 「왜」에서 얻는 결론을 법질서에 유추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도 이끌어 낼 수도 있는 것이다.

법이란 인간의 의식활동의 산물로서 既存의 사회질서를 보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존질서를 보존하려는 수단으로서의 법이란 인간의 자기 갈등, 사회적 갈등, 즉 자기분열, 사회적 분열을 조정·해소시켜 人間統合, 社會統合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분열 상태를 법 강제를 통해서 정당화하거나 강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들은 既存 법질서 속에서 心理的인 安定感만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므로 법이 어떤 도그마를 인간의 의식·실천세계에 강요하더라도 비판·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법이 창조하는 도그마에 매달려 自己生存을 展開시키는 인간에게 法은 선량한 市民이라는 판단을 내려주는 과정을 통해서 기존질서를 보존하고자 한다.

## VI. 結 論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서, 法の 이데올로기성을 분석·탐구하고서 法の 存在根據를 객관적으로 해명해야 됨은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럼에도 질서유지, 정의구현과 같은 추상개념으로 어떤 법질서의 존재근거를 해명할 것을 고집한다면 理論的으로 重大한 과오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

그 과오란 밝힌 바와 같이 法 이데올로기성과 法強制가 결합하여 인간을 現實的으로 지배할 경우 인간의 의식·실천세계가 도착상태에 빠져 감금당하는 울타리가 질서유지, 정의구현일 수 있는데도 질서유지, 정의구현과 같은 추상개념으로서 어떤 법질서의 存在根據를 해명한다면 惡法的 질서를 正法的 질서로 둔갑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어떤 법질서의 존재근거를 해명함에 있어서는 ① 法에 內在된 가치·신념이 어떠한 人間觀, 世界觀을 전제로 한 가치·신념인가를 이론적으로 충분히 비판·검토하고, ② 法에 內在된 가치·신념들이 요구하는 인간의 모습, 사회 모습이 참된 모습일까? 또 실혹 法言語的인 次元에서는 참된 인간의 모습, 사회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들이 현실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즉 기존 법질서가 진정한 인간 統合, 사회 統合을 겨냥하고, 확보하는 질서일까? 를 회의하고 考察할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법의 이데올로기성도 그 배일이 벗겨지게 될 것이고, 법의 이데올로기성이 폭로될 때 어떤 법질서가 무슨 목적 때문기, 누구 혹은 어느 집단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가도 밝혀져 참된 의미에서의 법의 존재 가치가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19) 이데올로기가 생산해내는 도그마는,

① 속명론, 무관심, 냉소주의, 체념, 그리고 사회적 질서는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도 없다는 절대적 신념으로 나타내는 믿음 등.

② 오늘의 질서는 초자연적 힘(super natural forces)에 의해서 창조되고 지지 받는다는 주장 등이 있다. (Garner, *op. cit.*, p. 263).

### 참 고 문 헌

- 1) Reo M. Christenson, Alan S. Engel, Dan N. Jacobs, Mostafa Rejai, Hebert Waltzer, *Ideologies and Modern Politics*, Dodd, Mead & Company, New York, 1975.
- 2) G. Abcarian, M. palmer, *Society in Conflict*, Canfield Press, Sanfrancisco, 1974.
- 3) Robert A. Garner, *Social Change*,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Chicago, 1977.
- 4) Hans Barth, *Truth and Ideology*, trans. by F. Lilg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ley, Los Angeles, London, 1976.
- 5) Kwame Nkarumah, *Consciencism*, Monthly Review Press, New York, Lodon, 1970.
- 6) The Frankfurt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Aspects of Sociology*, trans. by J. Viertel, Beacon Press, Boston 1972.
- 7) István Mészáros, *Theory of Alienation*. Merin Press, London, 1978.
- 8) Harold D. Lasswell and Abraham Kaplan, *Power and Society*,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London, 1969.
- 9) Morton A. Kaplan, *On Historical and Political Knowing*,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1.
- 10) Martin Cartin Carnoy, *Education as Cultural, Imperialism*, Longman Inc. New York, London, 1977
- 11) Erich Fromm, *Man for Himself*,,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Henley, 1978.
- 12) Erich Fromm, *Escape from Freedom*, Routlege & Kegan Paul, London, Henley, 1977.
- 13) 藤田 勇, 法と經濟の一般理論, 日本評論社, 東京.
- 14) 和田英夫編, 法と國家, 學陽書房, 東京.
- 15) 平野義太郎, 國家法の科學的研究, 法律文化社, 京都, 1979.
- 16) 井上茂, 法哲學, 岩波書店, 東京, 1981.